

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 → 4일로 확대

-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-

오늘(4월 23일)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.

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, 고용보험법

* 공포 6개월 후 시행

◆ 소관 부서: 고용문화개선정책과 (044-202-7476)

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,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.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,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,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,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·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.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,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.

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 공포한 날부터 시행

◆ 소관 부서: 고용차별개선과 (044-202-7578)

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* 시,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.

* 간판·영업 표지물 제거·삭제, 위법성 공포 게시물 부착, 기구·시설물 봉인 등

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.

총괄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장	임희종 (044-202-7064)
		담당자	서기관	이창주 (044-202-7073)
		담당자	주무관	이민정 (044-202-7071)
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	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	책임자	과장	박정현 (044-202-7496)
		담당자	사무관	최수진 (044-202-7476)
파견법	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	책임자	과장	이태훈 (044-202-75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누리 (044-202-7578)



참고

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요

□ 제도 내용

○ 난임치료휴가(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8조의3)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**연간 6일 이내**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**최초 2일은 유급**으로 함 → **최초 4일로 확대**
☞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○ 난임치료휴가 급여(「고용보험법」 제75조)

<변경 전>

소속	최초 2일	나머지 4일
우선지원	(정부) 최초 2일분의 급여지급 (사업주) 통상임금 2일분 차액분 지급	무급
대규모	사업주가 2일분(통상임금 100%) 지급	무급

<변경 후>

소속	최초 4일	나머지 2일
우선지원	(정부) 최초 4일분의 급여지급 (사업주) 통상임금 4일분 차액분 지급	무급
대규모	사업주가 4일분(통상임금 100%) 지급	무급

- (지원기간) **최초 4일**(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지원)
- (지원수준)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1일 84,210원)

□ 요건 및 절차

○ (대상) 난임치료* 근로자(남·녀 근로자 모두 해당)

- *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(난임검사, 배란유도 등), 시술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포함

○ (신청절차)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,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 포함)를 사업주에게 제출